



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덤프방지관세 부과대상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

[시행 2022. 1. 1.] [기획재정부령 제882호, 2021. 12. 31., 일괄개정]

제1조(「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4412.39.9000호, 제4412.99.6100호 또는 제4412.99.9100호”를 “제4412.39.9000호 또는 제4412.99.1000호”로 한다.

제2조(「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제4412.39호”를 “제4412.39호, 제4412.91호, 제4412.92호”로 한다.

제3조(「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3701.30.9100호”를 “제3701.30.2000호”로 한다.

제4조(「일본·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(Coated) 인쇄용지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일본·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(Coated) 인쇄용지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제4810.14.1000호”를 “제4810.14.0000호”로 한다.

부칙 <제882호, 2021. 12. 31.>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